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36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정춘생 · 이해민 · 박은정
황운하 · 서왕진 · 김태선
김선민 · 김 윤 · 임미애
신장식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